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가.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422호.'09.2.6)에 따라 하위법률의 개정사항으로

나.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현실성에 맞게 하고자함.

(현행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모순이 있음)

3. 주요내용

가.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

현 행	개 정
〈주택과표구간 및 세율〉 · 0.4억원 이하 (0.15%) · 0.4억원초과 1억원 이하 (0.3%) · 1억원초과 (0.5%)	〈주택과표구간 및 세율〉 · 0.6억원 이하 (0.1%) · 0.6억원초과 1.5억원 이하 (0.15%) · 1.5억원초과 3억원이하 (0.25%) · 3억원초과 (0.4%)

4.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현행 지방세법 제188조인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2009.2월6일 개정되어 세법의 범위 안에서 군세의 개정사항으로 현 조례의 주택분 재산세가 재산세액 산출액과 실제부과 세액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불합리로 동일물건에 동일 세부담을 적용하여 산출세액과 실제 부과세액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정부의 공통된 사항으로 이번 조례개정의 조치는 절차상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